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
----------	----

제출년월일 : 2003. 3.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연체요율을 인하·차등화하여 수혜자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 경감.
- 지방청사의 신축설계시 기능별로 적합한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외적인 부정적 영향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대한 수익·허가조건을 명문화 하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에 대해 10년 이내 분할 납부시 매각의 유형에 따라 이자율을 각각 하향 조정(안 제14조, 제22조)
- 현행 공유임야 대부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사용요율을 산림법시행령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토록하여 현실화 하고, 영리목적의 경우에는 대부료 특례를 미적용(안 제23조, 제23조의2)
- 대부료, 매각대금 등에 대한 일률적인 15%의 연체이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정(안 제28조)
- 지방청사의 신축설계시 표준설계면적의 기준제시 및 기타 인용법령명의 수정, 용어의 정리 등에 대한 문구개정(안 제47조, 기타조문 생략)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3. 1. 23 ~ 2.17 (의견없음)
- 관련법령개정·공포 : 2002. 11.29
- 관련법규 : 별지첨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영 제82조의2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목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영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허가조건

제22조제1항중 "잔액에 연5%"를 "잔액에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잔액에 연8%"를 "잔액에 연 6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중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를 "제23조제3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25조의2 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를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1조의2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9조의4제4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총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영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금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금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행	개정안	사유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생략)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생략) 관세청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지 할 때에는 영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내장법위와 허가기간 및 인건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3)~(4)(생략)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2)-----지방 제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4조의2----- ----- ③~④(현행과 같음)	○ 법령 지정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생략) (4)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생략) (4)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현행과 같음) (4) <삭 제>	○ '01.3.30 조례개정시 제1항에 보존재산이 추가되어 내용이 중복됨.
제14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용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용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용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조문 내용에 따라 명칭변경 및 허가 조건 명시

[illegible]

현	행	계	정	안	사	유
제24조(토식채취료등) (1)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식채취료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식채취는 채취허가량에 그 인도의 당해원식의 양면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제24조(토식채취료등) (1)제23조제3항제3호	제24조(토식채취료등) (1)제23조제3항			() 2001.3.30 조례개정시 제3호를 삭제하여 인용법령 변경	
제2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제2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제2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1)~(3)(생략)	(1)~(3)(생략)	(1)~(3)(현행과 같음)				
(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u>세입세출예산</u> 의 원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u>세입세출예산</u> 의 원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u>세입세출예산</u>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규정상의 용어로 통일
(5)(생략)	(5)(생략)	(5)(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사유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1)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에 대하여 연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정수하지 아니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교환차액을 연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채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체 이자를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 설정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간종계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권리 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간종계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권리 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5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번호 변경	
제39조의4(배각대금의 간변) (1)~(3)(생략) (4)영 제9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각가격을 50퍼센트 감변하는 경우에 배상세산은 각 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준 수반 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세산 2.~5.(생략) (5)~(6)(생략)	제39조의4(배각대금의 간변) (1)~(3)(생략) (4)영 제9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각가격을 50퍼센트 감변하는 경우에 배상세산은 각 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준 수반 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세산 2.~5.(생략) (5)~(6)(생략)	제39조의4(배각대금의 감면) ①~③(현행과 같음) (4)----- ----- -----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 ----- ----- 2.~5.(현행과 같음) (5)~(6)(현행과 같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인용 법령 변경	

현	행	계	정	안	사	유
제47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기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 인력의 승가등 장래수요를 감안						
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와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						
동비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중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중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						
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칠판콘크리트 및 방·난방시설 완벽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주변에 광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						
구역을 설정						
제47조(청사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출판회						
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클						
라하여야 하며, 다음 기호에 적합하여야 한						
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						
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와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						
동비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중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						
계						
4. 중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방·난방시설을 완벽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						
계						
7. 청사주변에 광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						
구역을 설정						
() 지방청사 설계 표준면적 선정기준 마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신 설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적부판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영 제3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50이원 이상인 청사용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별표]

지방청사 ·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원
본청	99	56.16	38.88	17.92	7.65	7.2
동청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명		설계기준					비고
회의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황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기타부분을 포함하여 기준층 면적의 27%~33%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게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원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직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료실		(0.3~0.4㎡) × 공무원수					
창고		0.72㎡/인 ~ 0.85㎡/인					
전산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비(%)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2. 의회 청사

(단위 : m²)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시 위원회 수 : 3개 군 위원회 수 : 1개 구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m ² 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m ²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m ²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m ²	
		사 무 실	직원 수 × 7.2m ²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m ²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m ²
			기 자	50m ²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m ²
	d	유계실	의 원	의원 수 × 2m ²
			직 원	직원 수 × 2m ²
			방청객	방청객 수* × 2m ²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m ²	
		화 장 실	시 : 45~47m ² 군 : 36~77m ² 구 : 44~46m ²	
		기 타	예비실(50m ²)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구	수용시설설계
A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또는 가동식 스탠드를 설치하고, 보조기능으로서 4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을 마련한다. - 공연장내에는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의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면적을 조정하도록 하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유형	계	공용면적 (기계실 포함)	관리/사무	부대시설	계층별 전용실	공 연	체 육
A	100%	30.3	3.2	8.0	13.0	16.2	29.3
B	100%	29.2	3.7	6.4	12.7	13.6	34.4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A유형 (연구10~15명)	B유형 (연구10명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5,679	3,341	·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극 장	객 석	320	160
	무 대	240	120
	연습실	50	30
	분장실(남,여)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7	3
	악실 (1)	10	15
	악실 (2)	10	-
	소계 ①	661	338
부속시설	도구비치참고	120	40
	도구반입실	-	-
	영사실	30	20
	음향실	30	20
	기기실(무대)	25	-
	조명실	20	20
	측벽무장실	12	-
	방송중계실	10	-
	소계 ②	247	100
합계	계 ① + ②	908	438
	공용부분	605	292
	합 계	1,513	730

2) 제층별 전용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30	30
	아동실(2)	30	-
	부속창고	4	4
	소계 ⑤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50	50
	청소년실(2)	-	-
	소계 ⑥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50	30
	노인실(여)	50	30
	휴게실	30	-
	주 방	-	-
	건강상담실	10	-
	소계 ⑦	140	60
부녀실	부녀실(1)	50	50
	부녀실(2)	50	50
	부녀실(3)	35	-
	소계 ⑧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60	60
	회의실(1)	70	70
	회의실(2)	70	35
	회의실(3)	-	-
	회의실(4)	-	-
	다목적실	120	-
	주 방	8	-
	기자재창고	12	-
	전시코너	-	-
	소계 ⑨	340	165
합계	계 ⑤-⑨	729	409
	공용부분	373	220
	합 계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108	54
	작업실	23	12
	창고	23	12
	소개 ⑩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147	100
	소개 ⑪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당	70	-
	주방 및 창고	32	-
	휴게실	46	28
	소개 ⑫	148	28
합계	계 ⑫-⑭	449	206
	공용부분	192	88
	합 계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714	646
	강의실(남)	21	12
	사원실(남)	21	12
	강의실(여)	12	6
	사원실(여)	12	6
	부속실(1)	40	20
	부속실(2)	40	30
	대기실	22	15
	잠비실	75	60
	무대(집회용)	151	95
	트레이닝실 (소개육실)	50	-
	소개 ⑮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480	210
	상부발코니	-	-
	소개 ⑯	480	210
합계	계 ⑮-⑰	1,638	1,112
	공용부분	410	278
	합 계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m²)

구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51	22
	관장실	64	30
	용접 및 탕비실	26	26
	소회의실	20	10
	숙직실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0	-
	직능단체사무실(1)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	-
	소계 ⑬	231	148
합계	계 ⑬	231	148
	공용부분	124	80
	합계	355	228

4. 보건소

(단위 : m²)

구분	실명	면적기준	
		시 보건소	통합시 보건소
진료활동	접수 / 수납	13.86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10.89
	대기공간	36.00	48.00
	약국조제실	11.88	13.86
	약국창고	11.88	13.86
	입반전찰실	35.64	53.46
	저치실	17.80	17.80
	치과전찰실	27.54	27.54
	치과장비실	2.70	2.70
	치과용 환실	2.16	2.16
	소독실	8.91	8.91
	예방접종실	17.82	17.82
	소아놀이실	9.90	9.90
	수유실	7.92	7.92
	화장실	31.68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17.82
		상담실	35.64	35.64
		방사선실	49.92	81.66
진료 지원	c	입상검사실	65.34	65.34
사무 부 문	d	소장실	동장실 면적 준용	동장실 면적 준용
		전실(방비실)	9.90	9.90
		소회의실	17.82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m ²	
		다목적실	108	144
		창고	52.47	59.4
		여자휴게실	40	40
		당직실	13.86	13.86
		화장실	17.82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44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m²)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동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2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족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농교육실	66 내외
		확산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세비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	c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를 달리 할 수 있다.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3·2, 99·8·6, 2000·5·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임도의 설치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임과계열 학생의 실습을 위한 연습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성장이 정하는 면적의 경우
5.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90·7·14]

제62조 (대부로 또는 사용료) ①법 제75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로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로"라 한다)는 연도별로 징수하되, 연간 대부료는 당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0·7·14, 90·12·31, 92·2·22, 92·12·31, 95·6·23, 96·8·8, 97·11·29, 99·8·6, 2001·4·24>

1. 목축·종축, 휴양림·수목원·수렵장시설 및 법 제75조제 1 항제 4 호의 산업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100분의 1이상
2.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학교용지·청소년수련시설용·광업용·제조업용·수도사업용·화장장 또는 납골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이상
3. 기타 목적의 경우: 100분의 10이상

②삭제 <99·8·6>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 대부·사용허가기간중

4. 부동산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분양형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나. 임대형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50

다. 관리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라. 처분신탁 : 처분수입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받은 사용료·대부료·가산금·변상금·매각대금 또는 신탁수입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9·15)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9·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9·29, 98·7·16, 99·4·30, 2000·10·20, 2001·9·15>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 ③잡종재산중 동산(선박을 제외한다)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4·30>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의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9·4·30, 2001·9·15>

⑦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9·4·30>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매각대금의 잔액 또는 교환차금의 잔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1·9·15>

제100조의2 (소유권의 이전등) 제10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와 제1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설정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0>

(본조신설 94·9·29)

제100조의3 (잠종재산등의 매각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잠종재산에 대하여는 제91조·제92조·제96조·제100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부 및 매각기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9·15>

1.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
2. 도시재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체비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1.10.17 조례 제1838호>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00.01.10 조례 제1730호> <개정 2001.10.17 조례 제1838호>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삭제 1999.01.12 조례 제 1674호>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27 조례 제1148호>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4.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신설 2000.01.10 조례 제1730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신설 2000.01.10 조례 제1730호>
<개정 2001.10.17 조례 제1838호>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0.01.10 조례 제1730호>
2. 제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개정 1999.01.12 조례 제

1674호>

3 <삭제 2000.01.10 조례 제 1730호>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중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때

3. <삭제 1999.01.12 조례 제 1674호>

- 4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라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0.01.10 조례 제 1730호>

- 6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③영 제 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잠중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01.10 조례 제1730호>

<개정 2001.10.17 조례 제1838호>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0.12.10 조례 제1331호> <개정 1994.07.21 조례 제1492호>

<개정 2000.01.10 조례 제1730호> <개정 2001.10.17 조례 제1838호>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0.12.10 조례 제1331호> <개정 1994.07.21 조례 제1492호> <개정 1999.01.12 조례 제1674호> <개정 2000.01.10 조례 제1730호> <개정 2001.10.17 조례 제1838호>

③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10.17 조례 제1838호>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0.12.10 조례 제1331호> <개정 2000.01.10 조례 제1730호>

<개정 2001.10.17 조례 제1838호>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⑤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